

금연치료 지원 사업 변경 사항

□ 병·의원 변경 사항

○ 진료상담료 지원을 ‘타상병 동시진료’와 ‘금연치료 단독진료’를 구분하여 지원

– 금연치료외 다른 상병진료는 급여비로 진찰료 청구 가능

- 타 상병 동시진료 : 다른 상병 진료와 금연치료를 함께 진료하는 경우
- 금연치료 ‘단독진료’ : 다른 진료 없이 금연치료만 하는 경우

* 방법 : 공단 전산 ‘금연치료 진료상담 및 처방등록’ 화면에서 체크(○)

(전산화면)

동시진료여부	☒ 금연치료 단독진료	☐ 타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	수정저장
--------	--	--------------------------------------	------

<표1> 진료상담료 지원 내용

• 적용일(병의원 진료일) : ‘15.10.19.부터

(단위: 원)

구 분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계	공단지원	본인부담
진료 상담료	타상병 동시진료	최초	15,000	12,000	3,000
		유지	9,000	7,200	1,800
	금연 단독진료	최초	22,830	18,330	4,500
		유지	14,290	11,590	2,700

○ 진료상담료 본인부담률 조정 … <표1> 참조

– 건강보험 환자 : 20%로 하향 (기존 30%)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환자 : 본인부담 없음 (종전과 동일)

□ 약국 변경 사항

- 약국금연관리료를 **약**과 **보조제**로 구분하고 **약인 경우 8,100원**으로 상향하고, **보조제**는 현행과 같이 **2,000원**을 지원 ... <표1> 참조

<표1> 약국금연관리료 지원액

적용일(병의원 진료일) : '15.10.19.부터

(단위: 원)

구분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계	공단지원	본인부담
약국금연 관리료	약 (챔픽스, 서방정)	8,100	6,500	1,600
	보조제 (껌, 패치, 사탕)	2,000	1,600	400

- 약국금연관리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환자 <표2>에 의함
-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환자 : 없음(공단 지원)

- 금연치료 **약 값**에 대한 **판매 상한액** 정하고, 공단 **지원액**은 **상향** 및 **본인부담액**은 **하향** 조정 ... <표2> 참조

<표2> 약 값 상한액 및 지원액

적용일(병의원 진료일) : '15.10.19.부터

(단위: 원)

품명	판매 상한액 (1정당)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계	공단지원		본인부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챔픽스	1,800	1,800	1,440	1,000	360	지원 초과액
웰부트린 서방정	693	693	563	500	130	지원 초과액
니코피온 서방정	673	673	543	500	130	지원 초과액

- 약 값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환자 : <표2>에 의함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환자 : 없음(공단 지원)

○ 보조제(껌, 사탕, 패치) 구입비는 **기존과 동일**(정당 판매단가 등록)

- 보조제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환자 : **공단 지원액 초과 금액** (기존과 동일)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환자 : **국고 지원액 초과 금액** (기존과 동일).

○ 약국 전산 프로그램 사용 안내

◆ 병·의원의 금연치료 **진료일 2015.10.19.**을 기준으로 약제비등
비용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므로 전산 프로그램을 **10.19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시) 병의원의 금연치료 진료일이 **2015.10.17.**인 경우

➔ **약국 의약품 및 보조제 등록** (10.18일까지 진료건) 화면을 사용

예시) 병의원의 금연치료 진료일이 **2015.10.19.**인 경우

➔ **약국 의약품 및 보조제 등록** (10.19일 이후 진료건) 화면을 사용